

보도시점 2025. 2. 18.(화) 12:00 / 배포 2025. 2. 18.(화) 08:30
< 2. 19.(수) 조간 >

효성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대납을 요구한 행위 적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주)이 ‘포스코 포항 LNG 발전 자체기동 비상발전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며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였다.

효성중공업(주)은 2021. 11. 및 2022. 2.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다른 2개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 총 3,850만 원을 대납하도록 구두 지시하였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주)이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계약상 의무 없는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 효성중공업(주)은 심의일 이전 피해 수급사업자에게 대납 비용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였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적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다.

<붙임> “효성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

담당 부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책임자	과 장	김창완 (02-2110-6150)
	건설하도급과	담당자	사무관	김창배 (02-2110-6144)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1**법 위반 내용**

- (행위사실) 효성중공업(주)은 2021. 11. 및 2022. 2. ‘포스코 포항 LNG 발전 자체기동 비상발전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다른 2개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 총 3,850만 원을 대납하도록 구두로 지시하였다.
 - 효성중공업(주)은 대납을 요구하며 관련 사유나 사후 정산 예정임을 설명하는 등 수급사업자와 공식적인 협의를 진행한 사실도 없었으며, 수급사업자는 효성중공업(주) 임직원의 구두지시로 인해 법률상·계약상 의무 없는 공사대금을 대신 납부하게 되었다.

- (위법성 판단) 효성중공업(주)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을 대신 납부하도록 한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2조의2에서 금지하는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행위에 해당한다.
 - 효성중공업(주)은 피해 수급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사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공사 부분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킨 것이라거나, 피해 수급사업자에게 초과하여 지급된 기성금을 반환받는 대신 다른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나,
 - 공정위는 ▲대납 공사가 당초 피해 수급사업자의 공사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대납을 요구할 당시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었고 기성금이 초과 지급되었다는 것은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사후적 주장에 불과한 점, ▲효성중공업(주)은 이 사건 공사 외 다른 공사 예산 부족 또는 대금집행 편의라는 자신의 필요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대납을 지시한 점, ▲대납요구가 법률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졌던 점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다.

2

적용 법조 · 조치 내용

- (적용 법조) 법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 (조치 내용)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3

의의 · 향후 계획

-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써,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적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1. 효성중공업(주) 일반현황

(단위: 십억 원, 각 연도 기준일 기준)

피심인	기업집단	매출액			자산총액		
		2021년	2022년	2023년	2021년	2022년	2023년
효성중공업(주) (대표이사 우○○)	효성	2,355	2,589	3,096	3,034	3,486	3,416

※ 출처 : NICE Bizline 기업정보(nicebizline.com)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규정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